

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(김승희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4993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18. 8. 22.

발의자 : 김승희 · 광양시 · 박덕흠
함진규 · 김영우 · 김규환
이종명 · 윤영석 · 김성찬
정태옥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급속한 인구 고령화와 함께 치매 환자가 점차 증가하는 가운데, 현 정부는 ‘치매 국가책임제’의 일환으로 2017년 말부터 치매 예방, 상담, 조기진단, 치매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보건복지 지원 연계 및 교육 등 유기적인 ‘치매 통합관리 서비스’를 제공하기 위해 전국에 250여 개의 ‘치매안심센터’를 설치 및 운영하기 시작함.

한편, 현행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은 장기요양인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 신체적·정신적인 자유로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직접 할 수 없는 경우 그 가족·친족이나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이 대리할 수 있는 제도를 두고 있는바, 치매 관련 종합적 지원을 수행하는 치매안심센터가 치매환자의 장기요양인정의 신청 등을 대리하고 지원할 수 있게 할 경우 치매환자 및 그 가족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.

이에 장기요양인정 신청 등을 대리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에 「치

매 관리법」 제17조에 따른 치매안심센터의 장을 추가하는 내용의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」이 발의됨에 따라, 이에 맞추어 치매안심센터의 업무에 ‘장기요양인정 신청 등의 대리’를 추가하고, 치매안심센터의 장으로 하여금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환자로 판정된 사람 또는 그 가족에게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의 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도록 하여 치매환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려는 것임(안 제17조제2항 및 제3항)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김승희의원이 대표발의한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 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14994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,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

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법률 제15649호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7조제2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6의2.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 제2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장기요양인 정 신청 등의 대리

③ 치매안심센터의 장은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환자로 판정된 사람 또는 그 가족에게 「노인장기요양보보험법」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의 신청 또는 장기요양인정등급의 변경신청에 관한 사항(신청의 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)을 안내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2018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법률 제15649호 치매관리법 일부 개정법률	법률 제15649호 치매관리법 일부 개정법률
제17조(치매안심센터의 설치) ① (생 략) ② 치매안심센터는 다음 각 호 의 업무를 수행한다. 1. ~ 6. (생 략) <u><신 설></u>	제17조(치매안심센터의 설치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. 1. ~ 6. (현행과 같음) <u>6의2.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</u> <u>제2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장</u> <u>기요양인정 신청 등의 대리</u>
7. (생 략) <u><신 설></u>	7. (현행과 같음) <u>③ 치매안심센터의 장은 치매</u> <u>안심센터에서 치매환자로 판정</u> <u>된 사람 또는 그 가족에게</u> <u>「노인장기요양보보험법」에 따</u> <u>른 장기요양인정의 신청 또는</u> <u>장기요양인정등급의 변경신청</u> <u>에 관한 사항(신청의 대리에</u> <u>관한 사항을 포함한다)을 안내</u> <u>하여야 한다.</u>
③ (생 략)	④ (현행 제3항과 같음)